

도하개발라운드(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동향과 대응

최 낙 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I. DDA협상과 우리의 대응

1. DDA 논의동향과 전망

세계경제는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동안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최종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 채택된 도하각료선언문은 DDA가 폭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nced) 작업계획을 포괄하도록 규정하였다.

서비스, 농업 등 기설정의제는 현재 WTO에서 각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협상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미 벌여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의 원칙과 양허안 제출시한을 명시하였고, 비농산물(공산품)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협상의 목표와 방향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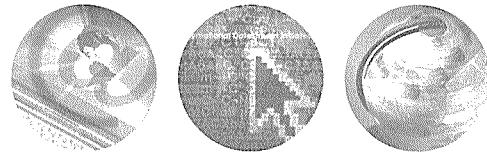
WTO규범의 개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벌이도록 예정되어 있다.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는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2003년 10월 이후 멕시코 개최 예정) 이후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표 1〉 DDA의 협상의제

의 제	양허안 제출 및 특기사항
• 농업, 서비스	• 5차각료회의(농업), 2003년 3월(서비스)
• 분쟁해결양해	• 2003년 5월(개선 및 명료화)
• 비농산물 시장접근	• 개도국 및 최빈개발국 이익 고려
• TRIPS	• TRIPS와 공중보건은 특별 선언문 체택
• WTO규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
• 환경(무역장벽감축, MEA · WTO 정보교환)	•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 제고
•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개시
• 투자, 경쟁정책	
• 전자상거래, CTE의제, 무역·부채·금융	• 5차 각료회의 보고사항
• 소규모경제 등 개도국 관련사항	• 검토 작업대상

서비스협상의 경우 1단계협상에 대한 만족감이 표명된 반면, 농업 및 공산품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년에 개최된 농업, 비농산물(공산품) 시장접근분야의 공식회의에서는 향후 의제를 둘러싸고 주요국간 침예한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한편, 반덤핑, TRIPS 분야 등은 협정을 개정



하려는 국가와 기존협정을 유지하려는 국가들간의 타협에 따라 협상의 기본개념과 원칙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존협정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새로운 무역이슈는 다자규범이 마련되더라도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비구속적인 규범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2. DDA와 세계경제질서

DDA 협상은 21세기 세계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DDA에서는 농업, 공산품, 서비스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규범개정 등 광범위한 의제(broad and balanced Work Programme)를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면적인 무역규범의 제정 및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UR협상과 다르게 DDA협상에서는 무역규범의 개정보다는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DDA협상에서 각분야의 무역보호수준을 40% 삭감할 경우 4,931억 달러의 후생증대 예상되며, Brown에 따르면, DDA에 따라 무역장벽이 33% 인하되면 세계후생은 6,130억 달러 증대가 예상된다.

WTO출범 이후 노동, 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세계적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하여 반세계화의 거센 도전이 대두되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산업에 있어 세계적 차원의 시설과잉(overcapacity) 문제가 심화되면서 통상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DDA가 타결되면 각국 산업의 우열이 뚜렷하게 드러남에 따라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성장세가 가속화되는 반면,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이중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이슈와 관련하여 도하각료선언문은 WTO의 기존규범과 다자환경협약의 무역관련의무와의 관계 등 3개의 사항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향후 다자환경규범의 제정 여부가 세계 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DDA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첫째, 국내무역장벽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향후 어떠한 협상방식이 채택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셋째, 국내산업의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DDA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나타나게 될 경제적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CGE(일반균형연산모형)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무역장벽을 계측하기 위해 서비스교역장벽에 대한 두 가지 추정치(Hoekman vs. 중력모형 추정치)를 고려하였고, 둘째, 협상방식으로서 (1) 모든 품목에 대해 무역장벽이 34%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일괄선행인하방식, (2)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장개방폭에 차등을 두는 관세조화방식을 고려하였으며, 셋째, 우리나라 산업의 대응력을 포착하기 위해 국내시

장이 (1) 완전경쟁적인 경우와 (2) 독점적 경쟁인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완전경쟁의 가정하에서는 대체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8~1.97%의 실질GDP 증가효과가 나타나며, 독점적 경쟁을 가정하는 경우에 2.55~4.21%의 실질 GDP 증가효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완전경쟁의 가정하에서 각각 0.27~0.43%, 0.35~0.65%의 GDP증가가 예상되며, 독점적 경쟁의 가정하에서는 각각 0.11~0.30%, 0.41~0.96%의 GDP 증가가 예상된다.

여타 주요국중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이 완전경쟁의 가정하에서 각각 1.06~1.88%, 0.94~3.29%의 GDP 증가가 예상되며, 독점적 경쟁의 가정하에서는 각각 2.35~4.43%, 4.06~13.03%의 GDP 증가가 예상된다.

〈표 2〉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

	정태적/완전경쟁		동태적/독점적 경쟁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한국	1.08	1.97	2.55	4.21
미국	0.27	0.43	0.11	0.30
일본	0.35	0.65	0.41	0.96
EU	0.55	1.54	0.83	2.71
캐나다	0.37	0.91	0.47	1.57
중국	1.06	1.88	2.35	4.43
아세안	0.94	3.29	4.06	13.03
기타	1.10	1.62	2.41	2.64

주) 시나리오1 : 일괄인하를 가정하고 교역장벽을 중력모형으로 추정

시나리오2 : 관세조회방식을 가정하고 교역장벽을 Hoekman방식으로 추정

독점적 경쟁을 가정하는 동태적 모형에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의 수출은 6.70~6.75%의 수출증가와 7.73~7.85%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교역조건은 0.83~0.91%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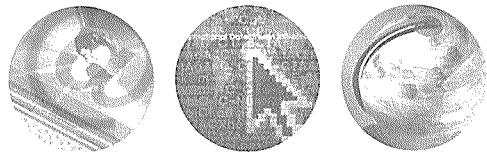
	수 출		수 입		교역조건	
	시나리오1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시나리오3
한국	6.70	6.75	7.73	7.85	0.91	0.83
미국	4.71	4.64	3.66	3.58	0.07	0.08
일본	5.73	7.09	6.55	8.21	0.82	1.20
EU	2.60	2.33	2.59	2.31	0.25	0.05
캐나다	1.75	2.19	1.75	2.25	0.15	0.10
중국	11.62	13.59	13.62	16.64	-0.62	-2.22
아세안	7.15	11.84	7.62	12.98	-0.32	-1.42
기타	7.94	3.89	7.79	3.59	-0.74	0.01

주) 동태적/독점적 경쟁의 가정하의 분석결과임.

시나리오 3 : 관세조회방식을 가정하고 교역장벽을 중력모형으로 추정

DDA에 따라 우리 경제가 2.55~4.21%의 실질 GDP 증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바, 이러한 결과는 DDA가 우리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협상방식 등 향후의 협상 결과와 우리 경제의 대응여하에 달려 있다. DDA협상은 가격 하락을 통해 수출입, 국내생산, 수요부문 등에 파급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각국 경제에 나타나게 될 효과는 협상타결 후 대략 5년 정도의 기간동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DDA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동태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별로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참여국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 DDA와 한국경제의 대응

(1) 협상전략

지난번 UR협상을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과 경제사회적 비용에 관심이 높았지만, 장기적인 효과의 극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은 DDA가 타결되면 무역장벽 완화에 따른 계량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면 비계량적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 및 서비스분야의 분야별·품목별 request/offer협상을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상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 등 주요국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어 온 국내산업으로서는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의 명료화를 위한 개정작업에서 국내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friends group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 농업대책

한국농업은 2001년도 기준 전체 GDP의 3.7%,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0.8%, 총수입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동안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로서, 동 분야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농업의 문제점은 농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사

업선정 및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한 의사결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사업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

현재, 농업분야는 서비스분야와 함께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이미 2000년도부터 차기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타 협상의제에 비해 협상의 진행속도가 빠른 편이다. 다만, 시장 접근(관세, TRQ, 국영무역 등), 보조금(감축대상 보조, 허용보조 등), 수출보조, 수출신용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협상은 회원국간 현저한 입장차이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쌀의 관세화 유예연장 여부,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등 한국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한국농업의 구조조정은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업분야 구조조정전략의 구체화를 통한 장기비전의 제시, 경쟁력이 없고 식량안보상 중요하지 않은 품목의 시장개방의 확대(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은 유지), 쌀의 관세화도 고려(관세수입을 허용보조금으로 활용), 직불제의 확대(환경보전 직불제 등), 농업투융자사업의 개혁(사업자 선정시 효율성 우선 고려), 농협유통사업의 개혁 등이다.

(3) 제조업 대책

선진 경제의 경우, 70% 이상의 근로자들은 정보 처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공장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전 세계적 네트워크의 발달은 바야흐로 '지구촌시대'

를 구현하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이래 세계경제는 경제자원의 희소성(scarcity)이 중요한 경제원리로 작용했으나, 앞으로의 경제는 풍부성(abundance)이 더욱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이에 따라 산업자본 시대의 수확체감의 법칙대신에 수확체증의 법칙이 지배할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분야는 지식과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전통산업도 지식 및 정보기술과의 융합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 시장 및 조직들은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이용한다면 시간과 공간에 큰 구애되지 않으며, 개별국가들의 법·제도·장벽을 뛰어 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제의 경우 DDA협상이 타결되면, 전기·전자 등 정보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섬유·의류, 석유·화학, 계 등 전통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농산품(공산품) 시장접근협상은 우리 경제가 뉴라운드에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와 기업들은 국별·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해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관세인하공식에 근거한 공산품협상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되, 미국의 주장에 따라 품목별 및 부문별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에도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WTO회원국의 품목별 관세율 및 경쟁력 현황분석을 토대로 품목별 request/offer 협상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문별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4) 서비스 부문의 대응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업체가 진출해서 국내 서비스업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 자체로써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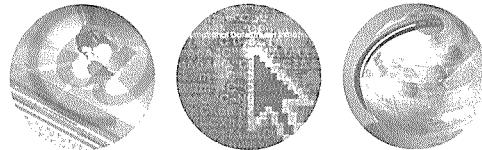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거래 관련 법률 자문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게 되면, 해외유학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기존 국내 대학을 자극하여 질적 향상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DDA 서비스협상에서 주요 서비스 분야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요청된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변호사나 외국의 법률사무소가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자국법이나 국제거래 관련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변호사가 투자형태를 통해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을 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

(5) 기업경영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경쟁의 격화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가혹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DDA 출범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향후 협상내용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기업들의 경우 개방을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변화의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종 기업의 경우 관세인하로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번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자세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경우 기대이상의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술개발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이 혁신이 요구됨. 그러나 정보통신, 해운, 항공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진입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DDA 협상의제로 환경문제가 포함되었고, 앞으로 투자 및 경쟁정책 이슈도 논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새로운 통상이슈가 개별기업의 경영활동에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의제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경영활동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 필요함. 친환경적인 경영활동은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하며, 장기간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FTA협상과 우리의 대응

1. 지역주의의 현황

2001년 현재까지 GATT/WTO에 통보된 지역협정 중 현재 활동중인 협정은 172개에 달하고 있는데, 1995년 WTO 출범이후 통보된 지역협정

은 96개에 달하고 있어 최근 지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WTO 회원국중 한국 및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WTO는 세계총무역 중 지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현재 43%이며, 2005년에는 51%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4〉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

구 분	1948~1994	1995~현재	현재까지 등록된 지역협정 *	현재 활동중인 지역협정	추진중인 지역협정
전 수	124	96	220	172	68

* 220개는 WTO에 통보된 총 지역협정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미가입국이 기존 지역협정에 신규 가입하는 것 까지 포함

GATT/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57년에 유럽공동체(EC)가 최초로 WTO에 통보된 이래 1980년대 초반 까지는 주로 EC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었다. 1948년부터 1989년까지 GATT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 중 활동중인 협정이 29개에 불과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10여년 사이에 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이 143개에 달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최근들어 RTA에 대한 관심 급속 고조, FTA 추진 교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이 양자간 FTA 체결을 적극 추진중인데,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조기 형성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배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2001년 10월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도 아세안과 자유무

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세안+3 회의에서 제시된 동아시아FTA 구상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착수한데 이어 중남미 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부시정부 출범 이후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FTAA는 2005년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EC는 GATT창설초기부터 GATT24조를 통해 다자간협상체제의 예외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1994년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경제통합을 완료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EMU의 성공적인 정착과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강화 등을 통해 기존 회원국의 역내 정치경제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東進 및 南進 정책에 의한 외연적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00년에 창설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를 기초로 경제통합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도 1989년 발족한 아랍마그레브연맹이 공동시장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지역내의 협정뿐만 아니라 미국-싱가포르, 멕시코-싱가포르, EU-칠레 등 상이한 지역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간 연계라고 할 수 있는 EU-Mercosur, Mercosur-안데스공동체(ANCOM), ‘호주·뉴질랜드 경제긴밀화협정(CER)’-AFTA 등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 지역주의 확산의 배경 및 평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regionalization)는 경

제통합, 블록화 및 지역경제협력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경제권 형성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대규모 시장의 형성, 역내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회피 및 타지역주의의 대응 등이지만, 각각의 지역경제권의 추진계기와 목적은 지역적 특성, 역사적 배경 및 경제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최근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배경은 첫째, WTO 등 다자주의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둘째, 미국 및 EU등 주요 국가의 RTAs 추진에 따른 연쇄적 파급 효과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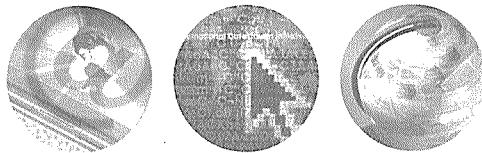
GATT 제24조항에서, 특혜무역협정은 다음 세가지 조건하에 허용된다. 부분적인 특혜가 아니라 100퍼센트 특혜를 제공하고, 특혜는 실질적으로 모든 회원국간 무역을 포괄해야 하며, 관세동맹체결이후에는 비회원국에 대한 평균관세 장벽이 협정체결 전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GATT 제24조는 지역협정이 WTO회원국들에 통보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와 기타 규제를 철폐한다면 허용된다. 지역주의는 다자협상에서의 시너지효과를 제공한다.

3.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일본과의 FTA이외에도 태국, 뉴질랜드, 미국과의 FTA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도 착수하고 있다.

칠레와는 1999년 9월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상품양허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가 조율중이다.



〈표 5〉 칠레와의 FTA 협상 경과

• 1999.9	• APEC 정상회의시 FTA 협상 개시 합의
• 1999.12~2000.12	• 4차에 걸쳐 협상을 개최
• 2000.11	• 브루나이 개최 정상회담시 조속 타결키로 합의
• 2001.3.7~8	• 양허안에 대한 실무협의 개최 (산타아고)
• 2001. 6. 10	• 양국 통상장관간 협상진전 방안에 대해 협의
• 2002.2.21~22	• 고위급협의 개최 (LA): 양국간 정치적 의지 재확인
• 2002. 7.	• 양허안 협의(예정)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상품양허안과 관련, 우리측은 우리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 농산물의 예외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칠레 측에 공산품중 우리 관심품목의 관세 조기 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칠레측은 예외없는 양허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칠레는 남미대륙 FTA 네트워크의 hub로서 한·칠레FTA 체결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는 이미 볼리비아(93.7), Mercosur(96.10), 멕시코(92, 97.1), 베네수엘라(97.1), 캐나다(97.6), 콜롬비아(98.1), 에콰도르(98.1), 페루(98.7)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미국, EU, 한국, EFTA, Mercosur (관세동맹 가입), FTAA, 일본(공동연구 단계), 중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カラ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나마, 쿠바 등과 FTA 추진중이다.

한·일양국은 한·일FTA의 추진 가능성에 대

〈표 6〉 한·칠레 교역구조 (2001년)

(단위 : 천불, %)

순 위	대칠레 수출			대칠레 수입		
	품 목	금 액	비율	품 목	금 액	비율
	총수출액	572,596	100	총수입액	696,109	100
1	휴대용 전화기	86,139	15.0	동괴	334,884	48.1
2	경유	52,504	9.2	동광	150,162	21.6
3	화물자동차	48,397	8.4	펄프	69,090	9.9
4	세단형 승용차	39,605	6.9	철강	34,191	5.0
5	지프형 승용차	33,358	5.8	기타 석유화학제품	30,902	4.4
6	폴리에스터 직물	22,886	4.0	기타 수산가공품	15,208	2.2
7	세탁기	20,799	3.6	아연광	9,147	1.3
8	스테이션 왜건	20,334	3.6	제재목	9,095	1.3
9	고밀도 에틸렌	19,191	3.4	기타 어류	8,644	1.2
10	자동차 부품	17,656	3.1	포도	8,438	1.2
기 타	저밀도 에틸렌, 편직물, 기타 승용차, 스테인레스 및 합금강 봉강, 타이어, 착색아연도 강판, 칼라 TV(19~20인치), 연축전지, 냉장고 (200~400) 리터)	211,727	37.0	파티클보드, 금속 광물, 정밀화학원료, 동스크랩, 단판, 원목, 어육, 비료, 원동기	26,348	3.8

한 연구를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측 연구기관으로 KIEP, 일본측 연구기관으로 아시아경제연구소를 지정한바 있으며, 2000년에 서울과 동경에서 각각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ASEAN 등 여러 국가 또는 지역과의 FTA 타당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과는 아직 FTA 관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들 국가와도 장기적으로 여전히 조성되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GATT 또는 WTO라고 하는 다자무역질서를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WTO 차원에서 지역주의의 무절제한 확산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에 따라 지역협정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에 합치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동문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WTO DDA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FTA의 상대적 유용성을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DDA 협상은 폭넓은 협상의제에 비해 단기간(3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중국 가입과 함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된 개도국들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다소 자연될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무역질서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다원적 통상전략(multi-track approach)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FTA를 형성한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주요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FTA를 바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외국의 통상압력도 없는데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소극적인 차원이다.

FTA는 방어적인 차원보다는 무역·산업정책 등 미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외국 시장의 개방과 수입규제의 철폐를 통해 무역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전략적 제휴의 가속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KIEP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수출증대 6.6억불, 수입증대 2.6억불로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4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앞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일부부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한·칠레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칠레에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의 수출확대를 기대하듯이, 칠레 농업부문도 우리나라에 과일 수출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도, 사과, 배 등 일부 과일을 예외품목으로 하는 우리의 협상안을 칠레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로서는 칠레가 우리와 계절이 상반되는 점을 활용하여 계절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칠레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국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